#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10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김민전·김기웅·한지아

박상웅 • 박덕흠 • 박수민

김석기 • 인요한 • 나경원

유용원 · 조정훈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6.1 지방선거 17개시·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 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35만 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 수준임.

이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보니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깜깜이 선거로 반복되는데 기인한 것임.

또한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각각 선출되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리된 집행기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자치사무 와 교육사무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바, 견해가 상이한 경우 대립과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교육정책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 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지방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방지하고 지방교육 발 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9조의2(교육감후보자의 지명 등) ① 시·도지사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1명을 교 육감후보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때에 제1항에 따라 지명한 사람(이하 "교육감후보자"라 한다)에 관한 제4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교육감후보자 지명서 및 본인승 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교육감후보자로 지명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의 제출, 전과기록의 조회, 전과기록의 회보 등에 대하여는 제49조제10항 후단을 준용한다.
  - ④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 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에 관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 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는 제1항에 따른 지명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후보자가 사퇴 ·사망한 경우에는 교육감후보자의 지명을 변경할 수 있다.
- ⑦ 교육감후보자지명에 관한 각종 서류의 서식과 제출·회보받은 서류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후보자등록 후에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지명한 교육감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 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
- 2.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3.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제5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보궐선거등의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후보자로 지명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의 제목 중 "신고"를 "신고 등"으로 하고,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 자를 통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 다.

제5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후보자가"를 "후보자 또는 교육감후보자가"로 한다.

제5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제64조제1항 본문 중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을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교육감후보자의 성명·경력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중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이"를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이"를 "경력·학격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경력등에"를 "경력이나 교육감후보자의 성명·경력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경력등에"를 "경력이나 교육감후보자의 성명·경력에"로 한다.

제65조제1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후보자의 사 진·성명과 제8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제3항·제5항"로 한다.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219조제2항 중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로 한다.

제22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2조제1항·제3항"을 "제52조제1항·제3항·제5항"으로 한다. 제223조(당선소송)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교육감후보 지명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지 사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제49조의2(교육감후보자의 지명 등) ① 시·도지사선거(보궐선 거등을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1명을 교육감후보 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지 명한 사람(이하 "교육감후보자" 라 한다)에 관한 제4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교육감후보 자 지명서 및 본인승낙서를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교육감후보자로

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의 제출, 전과기록의 조회, 전과기록의 회보 등에 대 하여는 제49조제10항 후단을 준용한다.

- ④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되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에 관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 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는 제1항에 따른 지명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후보자가 사퇴·사망한 경우에는 교육감후보자 지명을 변경할수 있다.

제52조(등록무효) ① ~ ④ (생 략) <신 설>

⑦ 교육감후보자지명에 관한 각종 서류의 서식과 제출ㆍ회 보받은 서류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등록무효) ① ~ ④ (현행 과 같음)

- ⑤ 후보자등록 후에 시・도지 사선거의 후보자가 지명한 교 육감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는 때에는 그 시 · 도지사선거 의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 다.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 제24조에 따른 교육감후 보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
- 2.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 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3.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 록한 것이 발견된 때

~ (5)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 ⑤ (생 략) <신 설>

제54조(후보자사퇴의 <u>신고</u>) (생략) <신 설>

第55條(候補者登錄 등에 관한 公 告) 候補者가 登錄・辭退・死 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 때 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 會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고, 上級選擧管理委員會에 보고하 여야 하며,下級選擧管理委員會 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선거벽보) ① 선거운등에 제64조(선거벽보) ① -----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후 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보궐선거등의 경우 선 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 만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 을 가지고 교육감후보자로 지 명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후보자사퇴의 <u>신고 등</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교육감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를 통하여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
고하여야 한다.

1155조	스(후보지	-등록	등에	관한	공
<u>고)</u>	후보자	또는	교육	감후보	_자
<u>가</u> -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의 사진(候補者만의 寫眞을 말 한다) · 성명 · 기호(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 한다. 이하 같다) · 정당추천후 보자의 소속정당명(無所屬候補 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 • 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 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 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 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 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 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 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 과정명과 수학기관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 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 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 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 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 · 정견 및 소 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 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比例代 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 區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 · 도의원후보자 명 단을, 지역구자치구 · 시 · 군의 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 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候補者외의 者의 人 物寫眞을 제외한다)을 게재하 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 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 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 · 첩부한다. 다만, 인구밀 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 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 ② ~ ④ (생 략)
- ⑤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

비례대표자
<u>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u>
<u>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해</u>
당 교육감후보자의 성명・경력
<u>을</u>
② ~ ④ (현행과 같음)
(5)

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는 선거벽보 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ㆍ기 호·소속 정당명과 경력·학력 · 학위 · 상벌(이하 "경력등"이 라 한다)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 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 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 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에 따른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 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 당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 나 종전의 배열방법 · 색상 · 규 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⑥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u>경력등에</u>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 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 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

•
거 거 정. 거
<u>경력·학력</u>
·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
라 한다) 또는 교육감후보자의
<u>성명·경력이</u>
6
<u>경력이나 교육감후보자의 성</u>
명 · 경력에
<u>0 70 7 11</u>
<b></b>

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 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 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 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⑦ ~ ⑫ (생 략)

제65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대통 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 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 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 공보 1종(대통령선거에서는 전 단형 선거공보 1종을 포함한 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 • 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

⑦ ~ ⑫ (현행과 같음)
제65조(선거공보) ①

야 한다.

② ~ ⑭ (생 략)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 | ス 選無效 등) ①・②(생략)

- ③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無效로 하다.
- 1. (생략)
- 2. 當選人이 제52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등록무효사 제2항ㆍ제3항ㆍ제5항----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 3. (생략)
- ④ ⑤ (생 략)

제219조(선거소청) ① (생 략)

②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 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

	<u>하며, 시·도지사선거에</u>	있
	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u>규</u>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교육감후보자의 사진·성명	과
	제8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게
	재하여야 한다.	
	② ~ ⑭ (현행과 같음)	
1	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
	<u>선무효 등)</u> ①·② (현행과	같
	승)	
	③	

1.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19조(선거소청) ① (현행과 같 음)

선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 는 政黨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 決定日부터 14日 이내에 제52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 제190조(지역 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 ·공고·통지) 내지 第191條(地 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 는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 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訴請 人으로 하여 지역구시 · 도의원 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 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自治 區・市・郡議員選擧 및 自治區 ・市・郡의 長 選擧에 있어서 는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비 례대표시 · 도의원선거, 지역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市・道知事選擧에 있어서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訴請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u>&gt;</u>	<u> 레52</u>
조제1항부터	제3형	<u> </u>	및	제5
<u>하</u>				
③ ~ ⑦ (현형	행과	같음)	)	

第223條(當選訴訟) ① 大統領選舉 및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당 선의 효력에 異議가 있는 政黨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 다)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 日부터 30日이내에 제52조제1 항ㆍ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 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 人을,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第2 項. 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 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 項 내지 第4項, 第189條(比例代 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 人의 決定・公告・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 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 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제4항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大 統領選擧에 있어서는 그 當選 人을 決定한 中央選擧管理委員 會委員長 또는 國會議長을, 國 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島

제223조(당선소송) ①		
ᆌᇊᇫᆌ		
<u>제52조제1</u>		
<u>항 • 제3항 • 제5항</u>		

각각 被告로 하여 大法院에 訴	
를 제기할 수 있다.	